

여권 재발급 사유서

(분실·훼손 등)

여권번호		발급일자	
한글성명		유효기간	
영문성명		종 류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거주 <input type="checkbox"/> 관용 <input type="checkbox"/> 외교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 '여권 분실신고서' 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 일자, 장소 및 사유를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자 및 장소	
사유	

담당자 확인란	최근 5년 이내 분 실 횟 수 : 회 확인자 :
------------	--

20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_____

외교부장관 귀하

- ※ 주의사항
1. 분실신고로 무효처리된 여권은 다시 찾은(재습득) 경우에도 재사용이 불가하며,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출국도 금지됩니다.
 2. 여권을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또는 1년 이내 2회 이상 분실시 경위확인을 받게 되고, 여권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제한됩니다.
- 최근 5년 이내 2회 분실시 여권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됩니다.
 3. 여권(재)발급 등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할 경우는 「여권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